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3. 은행잔고 및 카드사의 대출에 의한 납부유형
- Ⅲ. 새로운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제도의 장점
- Ⅳ.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검토
- Ⅴ. 향후 추진계획 및 관련당사자의 협조 요망

【참고사항】

1.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에 의한 새로운 납부방법의 흐름도
2.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
3. 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
 - (1) 현행 일반거래상 신용카드 이용조건
 - (2)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사례
4. 만약, 물품구매방식(카드전표 발행방식)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경우의 문제점

주 요 내 용
□ 신용카드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○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물론,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음 (현재 신용카드 발급수 : 약4,000만매) ○ 카드사 및 은행에 「국세납부 중계센터」(서버)를 설치하여 인터넷 등 전자방식에 의한 세금납부신청의 접수를 하고, 카드론이나 대출을 하여 주는 등 납부편의를 제공 □ 인터넷,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○ 현재는 은행, 우체국, 세무서의 수납창구에서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○ 앞으로는 인터넷, 전화, 은행 등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【참고】 국세를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의 방법 ① 은행예금잔고나 은행대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설치된 「국세납부중계서버」로 접속하여 국고계좌로 이체 ②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단기간(일시) 또는 장기간(할부)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론 요청 ☞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납부

Ⅰ. 추진배경

□ 「신용카드 및 전자방식에 의한 국세수납」은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Digital 세정의 핵심과제였으나, 수수료부담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음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□ 이에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최신정보기술(IT ; Information Technology)을 응용한 전자지불수단을 종합적으로 국세납부에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현 행	⇒카드사용	⇒	개 선
* 수납의 수동처리	일반화		* 납부수단 다양화
* 납부장소 제약 ☞ 은행, 우체국, 세무서	⇒전자상거래 활성화	⇒	☞ 전자납부 (인터넷, 전화, ATM)
* 납부자금원 한정 ☞ 현금납부(잔고)	⇒납부수단 다양화 요구	⇒	* 납부자금원 확대 ☞ 현금+카드론(대출)

□ 납세자의 편의 증대

- 직접 은행 등 국세수납창구에 가지 않고도 세금납부 가능
- 일시적 자금부족의 경우에도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감소

□ Digital 세정의 구현

- 이미 추진중에 있는 전자신고(e-file) 및 전자서비스(eservice) 제도와 더불어 이번에 전자납부(e-payment)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전자세정의 기초를 확립함은 물론,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선진 세정모형을 구현코자 함

II.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의 내용

요 약
신용카드사 및 은행을 통한 전자납부 ⇒ 가맹점수수료, 납기문제 해결
◇ 현행 : 은행·우체국 수납창구에서 현금납부(계좌잔고 이용)
◇ 개선 : 현행 + 카드·은행대출 이용 + 전자납부(인터넷·전화·ATM)
☞ 신용카드의 범용성·즉시성·편의성·신용평가기능 활용

1. 신용카드사를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(카드론 활용)

□ 신용카드사 및 은행에 『국세납부 중계센터』(서버)구축

○ 납세자는 인터넷, 전화, ATM 중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중계센터(서버)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절차를 수행하면 됨

* 서버(Server) : 주전산기(Host Computer)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대방의 접속은 물론, 주전산기와 별도작업이 가능한 전산장치

* ATM(Automatic Teller Machine) : 현금자동입출금기

○ 카드사의 카드론과 은행의 대출기능을 세금납부와 연계하여 운용

☞ 특히, 신용카드가 가지는 범용성(4,000만매 이상 보급), 즉시 응답하여 처리가능한 즉시성, 사용이 간편한 편의성,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평가기능 활용 가능

□ 납세자가 이용하려는 자금원에 따라 납부방식을 선택

○ 카드사 : 카드론 이용시 카드사에 설치된 센터 이용

○ 은행 : 은행잔고 및 은행대출 이용시 은행센터 이용

□ 필요시 국세청이 동 중계센터(서버)에 납부관련자료 제공

○ 납세자의 기밀보호를 위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위 중계서버에 고지내용 등 납부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향상은 물론, 입력오류비율 축소효과도 거둘 수 있음

☞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내용 등 간단한 납부관련 정보를 위 중계서버를 통하여 납세자(납부하고자 하는 자)에게 미리 제공하면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ATM상의 납부서 화면에 세액 등 일부사항만 입력하고 입력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승인하면 됨

2. 전자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□ 인터넷 :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사 및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센터(서버)에 접속

□ 전 화 :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하여 세금납부요청

☞ 폰뱅킹(홈뱅킹, 펌뱅킹) 등 버튼조작에 의한 납부(ARS에 의한 자동이체방식)

☞ 버튼 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구두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센터에 상담원 배치

□ ATM : 국세납부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은행, 우체국(이미설치) 및 세무서(향후 설치예정) 등 어디에서든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

☞ 필요시 이미 ATM에 전산연결되어 있는 카드사 및 은행으로부터 카드로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

3. 은행 잔고 및 카드사의 대출에 의한 납부유형

(1) 납세자의 거래은행 잔고나 은행대출로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→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 중계센터에 접속하여 계좌잔고나 (신용)대출금으로 국세납부계좌에 이체

(2) 납세자가 카드에 의한 일시불을 원할 경우 → 카드사에 접속하여 단기간 카드로론을 받아 세금납부

(3) 납세자가 카드에 의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→ 카드사에 접속하여 장기간(최장 36개월) 카드로론을 받아 납부

◇ 카드사 및 은행은 납세자가 인터넷, 전화, ATM등의 수단에 의하여 카드로론 및 대출자금에 의한 세금납부의뢰를 할 경우 카드로론(대출) 가능여부, 카드로론(대출) 기간, 이자부담 의향 등을 파악한 후 세금납부 가능여부를 알려줌

◇ 현재 카드로론 한도는 가입자의 신용에 따라 최고 2,000만원(개인) 내지 2,500만원(가맹점) 수준임

◇ 국세납부에 따른 카드로론 이자(연11~16%)나 은행대출이자는 이용자(납세자)가 부담토록 함

☞ 카드로론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자가 임의선택함

◇ 카드사 및 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납세자로부터 채권을 회수

☞ 회수방법은 현행 카드로론 및 은행대출의 경우와 같음

◇ 납세자가 위 방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기존의 은행수납창구, 우체국 및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(편의에 따라 현금·신용카드·전자납부를 선택가능)

III. 새로운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제도의 장점

□ 어디서든 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세금납부 가능

○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수납이 가능하나, 앞으로는 카드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

○ 또한, 은행, 우체국, 세무서 등 기존의 국세수납창구는 물론, 가정이나 직장, 심지어는 외국 등 어디에서든지 인터넷, 전화, ATM 등을 이용하여 세금납부 가능

□ 납세자의 편의

○ 세액 1,000만원 이하의 소액납부건수가 전체('99년 13,304천건)의 96%를 점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

○ 인터넷, 전화, ATM등 전자납부로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될 뿐 아니라, 납부수단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

○ 카드사 및 은행의 대출기능 활용 (특히, 자금수요가 많은 월말에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난 해결 가능)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☞ 세금체납시의 가산금(5%) 및 증가산금(월1.2%)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19.4%로서 현행 대출이자율보다 높고, 세금체납시에는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세금납부를 위하여 카드론이나 은행대출 등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

☞ 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것이므로 일반 카드론 이용자보다 연체의 위험부담이 적어 세금납부가 일반화되면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국세납기문제 해결

○ 카드에 의한 기존의 물품구매방식(이지체크, 전표발행)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 카드전표를 수령하여 그 대금이 수납되기까지 5일정도 소요되나

○ 인터넷 등 전자납부에 의한 경우 실시간(real time)으로 국세수납기관에 납부되므로 납기의 경과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

□ 별도의 시설 및 장비의 추가설치 불필요

○ 카드사 및 은행의 기존 전산시설에 서버만 구축하면 운용가능

○ 이지체크기 및 VAN등 설치 불필요

* VAN(Value-Added Network) : "부가가치 통신망"으로서 신용카드의 신용체크, 금융기관간의 대금결제 등을 중계하는 통신망임

○ 기타 시설 및 장비 신설에 따르는 경비 절감 가능

☞ 현재 세무서에는 ATM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, 카드납부 및 전자납부 시행시 추가로 설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□ 국세수납기관(은행, 우체국, 세무서)의 인력 절감

○ 카드전표, 납부서 등 장표류의 수동처리 축소로 인력 절감 가능

☞ 특히 은행수납창구의 인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
IV.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검토

□ 법적인 문제검토

○ 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

- 물품구매방식(카드전표 발행방식)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3호에 신용카드를 "물품의 용역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"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음

- 이번엔 시행하고자 하는 카드론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의 경우에는 위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카드사는 부대사업으로 '자금의 융통'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

○ 세금의 전자납부

- 전자납부의 경우 국고수납창구에서 바로 국고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현금납부되므로 현재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음

□ 기술적인 문제검토

○ 서버구축 : 카드사 및 은행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세수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전자문서를 접수할 수 있음

○ 문서교환 : 현재 카드사, 은행, ATM간에 전자문서교환(EDI ;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)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시행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

V. 향후 추진계획 및 관련당사자의 협조 요망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□ 각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

- 2000.6월 카드사·은행에 『국세납부 중계센터(서버)』를 구축하여 시험가동
- " 납세자 및 관련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2000.7월 일부 세무서 시범실시 및 문제점 보완
- 2000.9월 시범실시 결과를 보아 가며 전면실시
- ※ 「국세청 제2개청 1주년」(2000.9.1)

□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납세자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관간에 이미 합의가 도출된 사항이나, 국세납부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적·기술적 측면의 주도면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 납부를 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

아울러,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납세자와 언론, 관련기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요망됨

<참고사항2>

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

구분	기존 물품구매(카드전표발행) 방식으로 세금납부 (종전 검토, 문제점이 많아 미시행)	새로운 카드론·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금납부 (이번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)
처 리 절 차	카드제시(수납은행창구) 이치체크(신용체크) ↓ 카드전표발행, 세금납부 ↓ 수납은행, 카드전표를 은행지역본부로 이송 ↓ 은행 지역본부, 카드전표를 전산입력 후 카드사 본사로 송부 ↓ 카드사, 수수료 2% 공제후 대금을 최초 수납은행으로 지급 (약5일 소요) ↓ 수납은행, 수납금액을 한국은행으로 송금	인터넷, 전화 등으로 세금납부요청 (카드사·은행의 국세 납부 중계센터에) ↓ 신용심사 (카드론 및 은행대출등 승인) ↓ 카드사·은행의 대출금이나 납세자의 은행잔고로 세금납 부 (국고수납은행계좌로 바로 <u>전자이체</u>) ↓ 국고수납은행에 수납세금 집결 ↓ 수납금액을 한국은행으로 송금
처 리 매 체	이치체크, 카드전표 발행 등 <u>수동처리</u>	인터넷(PC통신 포함), 전화, ATM 등 <u>전자이체수단</u> 망라
가맹점수 수수료	2~5% (국가 또는 납세자 부담)	없음(단, 대출이용자가 대출이자 부담)
처 리 일 수	약 5일 소요	당일 또는 실시간 처리 완료
당 사 자 별 이 해 관 계	○카드사 : 수수료 수입 ○납세자 또는 국가 : 수수료 부담 ○수납은행 : 업무처리 부담	○카드사·은행 : 대출이자수입 ○납세자 : 자금유통, 납부편의 ○수납은행 : 업무감축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

1. 현행 일반거래상 신용카드 이용조건 (A카드 예시)

☐ 물품(용역)구입 및 현금서비스 -- 이지체크, 전표발행방식

구 분		물 품(용 역) 구 입		현금서비스
		일 시 불	할부(금융)	
거래내용		○카드가맹점에서 물품 등 구매	○왼쪽과 같음	○카드이용 현금 인출기에서 대출
사용한도		○70 - 5,000만원	○70 - 5,000만원	○70 - 200만원
대금결제		○약정 결제일 (평균 38일후)	○24개월 이내 분할하여 약정결 제일에 지급	○약정 결제일 (평균 38일후)
비용 부담	사용자	○무이자	○할부수수료 * 연14-18%	○대출이자 * 31일까지 2.2% * 48일까지 3.3%
	가맹점	○수수료(2-5%)	○수수료(2-5%)	-

☐ 카드로(신용대출) --- 국세납부시에 이용하려는 제도

구 분	가맹점 가입회원	개인 가입회원
거래내용	○인터넷, 전화, ATM등을 이용하여 대출	○왼쪽과 같음
사용한도	○최고 2,500만원	○최고 1,000만원
대금결제	○최장 36개월 이내 분할하여 약정 결제일에 지급	○최장 36개월 이내 분할하여 약정 결제일에 지급
이 자 율	○수수료 연13-15%	○수수료 연11-16%

☞ 국세체납시(연19.4%) : 납기후 5%가산금, 월1.2%의 증가산금

2.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 사례

☐ 외국의 사례

미 국 ('99년 처음 시행)

- 전자신고와 병행하여 전자신고 납세자의 자납신고분에 한정하여 적용(전자신고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)
- 수수료는 카드이용자(납세자)가 부담

☞ 제도 도입당시 의회는 『납세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므로 IRS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는 없다』 는 입장이었음

일본, 유럽 등 신용사회 기반이 구축된 선진국에서도 채택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

☐ 국내 사례

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

(이지체크, 카드전표 발행, 가맹점수수료 지급방식)

- '99. 8월말 현재 232개 시·군·구중 27개 단체에서 시행(전체 시·군·구의 11.6%)
- '99년도 상반기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76.6억(총수납액의 0.1%에 불과)

현재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약2~3%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행이 어려운 실정

<참고사항4>

제 목

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

만약, 물품구매방식(카드전표 발행방식)에
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경우의 문제점

1. 가맹점 수수료 부담문제 → 국세납부 적용시 가장 큰 걸림돌

- ☐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소요예상
국세의 30%를 2% 수수료로 납입시 : 연간 5,000억원 부담
- ☞ 이 경우 그 부담이 전체납세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, 성실하게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와의 형평문제도 발생

2. 납부일자문제 (납기문제)

- ☐ 신용카드를 사용(전표발행)한 후 국고납입까지 약5일 소요
납부일자를 국고수납일(자금결제일)로 할 경우 납세자는 법정 납부기한 5일전까지 신용카드에 서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서명일로 한다면 납부일자와 국고수납일이 달라 세액집계의 혼란이 발생하며, 특히 납기가 연말인 경우 연도이월 등 문제로 혼란 가중

3.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문제

- ☐ 전국 국고수납기관의 신용카드 체크기 도입, 전산시스템 및 VAN 구축비용 소요체크기 도입 : 10,521개×500천원 = 5,260 백만원
(은행 7,600개, 우체국 2,800개, 세무서·지서 121개)
- ☞ 그간 위 방식(카드전표 발행방식)에 의한 국세납부방안을 검토하였으나,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웠음

■

■ 이후 :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

목 록

한줄의견

성명 비밀번호

내용

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.